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7호 2019. 4. 15.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04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6
- 정선군 조례 제270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706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2707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27
- 정선군 조례 제2708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38
- 정선군 조례 제2709호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4
- 정선군 조례 제2710호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6
- 정선군 조례 제2711호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60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13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7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4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지역의 방범활동을 통한” 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란 각 읍·면별 봉사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고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 이라 한다)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초소” 를 “방범초소(이하 “초소” 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 지역의 방법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u>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법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원봉사 활동 기본법</u>」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u>자율방법대(이하 “방법대” 라 한다)</u>”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p>	<p>1. “<u>자율방법대(이하 “방법대” 라 한다)</u>”란 <u>각 읍·면별 봉사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고 자율방법활동(이하 “활동” 이라 한다)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u></p>
<p>가. <u>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고 자율방법활동(이하 “활동” 이라 한다)을 하</u></p>	<p><삭 제></p>

는 조직

나. 각 읍·면별 봉사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에 따라 정선경찰서와 그 관할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

2. (생략)

3. “방법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법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방법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초소 설치 및 그 내부 환경 개선비

3. (생략)

②·③ (생략)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경비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방법초소(이하 “초소”라 한다)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가.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규정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규정 명시(안 제1조)

나. 예규 형식의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을 근거규정으로 한 조문을 삭제 (안 제2조제1호)

다. 자율방범대“사무실”명칭 삭제(안 제2조제3호)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무급”을 “유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 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 니된다.</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 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 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 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 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p>	<p><삭 제></p>

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 개정 1996.03.09> ,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삭 제>

<삭 제>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④ (생략)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
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
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
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
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
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
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
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삭제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
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
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

<삭 제>

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⑤-----

----- . ----
----- 유
급-----.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1. ~ 3. (생략)

⑪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 3. (생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⑪-----

-----.

1. ----- 20일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⑫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이유

- 가. 2018년 정선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선군지부 단체협약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개선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안 제23조)
- 1)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4) 포상휴가 일수(3일→10일), 입영휴가 (2일), 장기재직휴가 10년이상~20년 미만 대상자 휴가일수(10일→20일) 확대 및 신설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고취함.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6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9세” 를 “45세” 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

-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비용 지원

제11조제2항 중 “13명” 을 “19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u>39세</u>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45세</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청년의 의료보장 지원</u>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의 상해 및 실손 의료보험비용 지원</p>
<p>9. (생략)</p> <p>②·③ (생략)</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 ⑥ (생략)</p>	<p>제11조(청년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9명</u>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 가. 청년층이 얇은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규정 연령을 완화하여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함
- 나. 군 입영(복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을 통하여 국가 보상금 외 후유 보상의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고자 함.
- 다. 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18세이상 39세이하를 18세이상 45세이하로 확대
- 나. 군 입영(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다. 위원회 위원 수를 9명이상 13명 이내에서 9명이상 19명이내로 확대 (안 제11조 ②항)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7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정선군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2. “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후,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3. “입관”이란 시신을 일정한 시신 보관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4. “발인”이란 시신을 안치실에서 반출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무연고 시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보건 위생적 장례의식을 위하여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사복장례식장
2. 위치: 정선군 사복읍 지장천로 727

③ 장례식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1. 주차시설
2. 식당(주방을 포함한다)
3. 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등)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隣友)보증서를 붙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전액을 발인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해당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며, 추가로 사용하는 접객실의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비워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료 납부 후 그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일 30일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무연고 시신. 다만, 군에 거주한 사실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안치실 등 관리) ① 안치실은 업무 관계자, 유족, 연고자, 수사기관의 요청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치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염습, 입관, 안치 및 발인의 경우에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해야 한다.

④ 염습, 입관 및 안치는 장례지도사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6의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4.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

[별표]

정선군 사북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사용료	비 고
빈 소 (접객실 포함)	1실마다 (1일 기준)	336,000	
안치실	1구마다 (1일 기준)	60,000	
염습실	1회	200,000	

※ 비고 :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은 해당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한
다. 다만, 24시간 미만인 때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추가로 접객실을 사용하는
때에는 빈소 1실마다 해당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한다.

◇ 제안이유

가. 공설장례식장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나. 장례식장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6조, 안 제8조)
- 다.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방안 제정(안 제11조)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8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전시실
- 2.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 3. 음악연습실(악기, 밴드 등)
- 4. 녹음실
- 5. 휴게공간
-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 2. 각종 문화 ·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 3. 문화 공간 ·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
- 4. 그 밖에 공공행사 · 지역문화 ·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사용허가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 ·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물품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 ·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교육기관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 ·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군 문화예술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50% 반환
5. 시설사용 개시 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3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10시 ~ 13시
2. 오후 : 14시 ~ 17시
3. 야간 : 18시 ~ 21시
4. 1일 : 10시 ~ 18시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7조(시설관리)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의무)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운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 출자·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주 소	우편번호 :		
	청	단 체 명	전	일 반() -
화			휴대폰() -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	
사용시설				
행 사 명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대시설			
변경사유 (취소사유)				
<p>「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1층 전시실		1일	20,000	사용기준 : 오전 10:00 ~ 18:00
2층 연습실 (다목적실)	오전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오후		10,000	
	야간		10,000	
3층 음악연습실	오전		5,000	
	오후		5,000	
	야간		5,000	
3층 연습실 (녹음실 미포함)	오전		5,000	
	오후		5,000	
	야간		5,000	

2. 부대시설

(단위 :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회(3시간)	10,000	

◇ 제안이유

가. 아리샘터 준공 후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 납부 및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생활문화센터 사업 내용 (안 제4조)
- 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안 제8조, 안 제16조)
- 다. 사용료의 감면 (안 제9조)
- 라. 사용허가의 제한 (안 제6조)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9호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물류보조금”이란 군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군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물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별표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류보조금 신청서(별지 서식)
2.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14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 벤처기업진

농공단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류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2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지원주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군내 공장	1. 물류보조금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업체 2. 물류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업체 3.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용×50%	12	반기별

[별지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제12조의2 관련)

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청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공장소재지			업종		
	(농공단지명:)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 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용 운송		영업용 운송		
신청액	원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계약서) 1부
2.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3. 기타증빙서류 1부
-세금계산서, 주유증빙서, 출하증(인수증), 기타 운송비 지출서류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업체대표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물류보조금”이란 군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군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u></p> <p><u>제11조(물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u></p>
<p><u>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u></p>	<p><u>제12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생 략)

<신 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제12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별
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별표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류보조금 신청서(별지 서
식)
2.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p>군,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u>중소기업진흥공단</u>,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제14조</u>·<u>제15조</u> (생략)</p>	<p>----- ----- ----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제15조</u>·<u>제16조</u>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
---	---

◇ 제안이유

- 가.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군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물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강원도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물류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로 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 달성
 -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업체(공장)로 한정

◇ 주요내용

- 가. 물류보조금 신설(안 제12조의2)
 -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 연간 1천2백만원까지 지원
- 나. 별지 서식 신설
 - 물류보조금 신청서(제12조의2 관련)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03.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0호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 를 “(적용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난을 말한다” 를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 를 “피해주민”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 를 각각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서식 앞쪽 중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중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며, 같은 뒤쪽 기호(*) 중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뒤쪽 제1호 중 “재난피해자들”을 “피해주민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정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u>재난</u>을 말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 <u>재난</u>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사회재난</u>으로</p>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 ----- ----- ----- ----- ----- ----- <u>피</u> <u>해주민</u>----- -----</p>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

1. -----

----- 피해주민 -----

2. (현행과 같음)

3. -----
----- 피해주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

----- 피해주민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신 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
 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
 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
 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
 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
 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
 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
 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 ① 생활

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 이라 한다)

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
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
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
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
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
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
게 신고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
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
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
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 ① 생활

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 치료비지원-----

피해주민-----

-----.

② ----- 피
해주민-----

-----.

③ ----- 피해주민
이 -----

----- 신고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피
해주민-----

----- 피해주민-----

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제8조제6항-----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방법) ---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 피해주민 -----

----- 피해주민-----
-----.

<p>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p><u>제9조(환수)</u> 군수는 <u>제6조제6항</u>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u>제4조</u> 및 <u>제5조</u>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p>	<p><u>제11조(환수)</u> --- <u>제8조제6항</u>--- ----- ----- <u>제7조</u>----- ----- ----- -----.</p>
<p><u>제10조</u> ~ <u>제12조</u> (생략)</p>	<p><u>제12조</u> ~ <u>제14조</u> (현행 <u>제10조</u>부터 <u>제12조</u>까지와 같음)</p>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내용 중 추가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안 제4조)
-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안 제5조)
- 다.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안 제6조)
- 라.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제11조)

제252회 정선군의회(2019. 3.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1호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으로 농업인의 선진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

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을 받은 후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제8조에서 “교육생” 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면허의 종류			
정 선 군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
총교육비	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위와 같이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서류 : 수료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안이유

- 농가소득증대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 사업 중 일부 임대 농기계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에 필요한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신청 및 범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 칙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3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자는” 을 “직원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의회” 를 “군의회”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를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 을 “별표 2”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명 할” 을 “임명할” 로 한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제4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로 한다.

제58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 을 “별표 4” 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기준” 을 “기준(별표 5)” 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 를 “(행정안전부 예규)” 로 한다.

제1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1·2·3·4·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입 관	기획실장	-	-
징 수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세무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입재무관)
분 입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군수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부군수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기 금 총 괄 관 리 관	기획실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납 외 원	경리·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 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 보건소 2.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3.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4. 정선군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5. 정선군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6.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7. 정선군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8. 정선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9.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10. 정선군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11. 정선군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12. 정선군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 보건소 고한사북지소 2. 정선군 신동읍 함백출장소

[별표 3]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용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용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 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4]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 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취급점(금고)의 정 기예금 중 최고이자 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 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 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 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u>자</u>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p>	<p>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직</u> <u>원은</u> ----- ----- ----- ----- -----.</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 <u>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u></p> <p>1. <u>본청</u></p> <p>가. <u>회계책임관: 기획실장</u></p> <p>나. <u>징수관: 부군수</u></p> <p>다. <u>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u></p> <p>라. <u>재무관: 부군수</u></p> <p>마. <u>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u></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 <u>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u></p>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
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
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카.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타. 지출원: 회계, 경리, 지출
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
과 서무업무담당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
리업무담당자<중전 가목부
터 하목은 나목부터 가목으
로 이동 2017.3.7.>※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
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
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이하 같
음)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사무과장

- 나. 재무관: 사무과장
- 다. 채권관리관: 사무과장
- 라. 부채관리관: 사무과장
- 마. 지출원: 의사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
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 가. 징수관: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세입담당과장
-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
관)
- 라.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
경비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 사.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
당
- 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
과 서무업무담당
-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
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가. 징수관: 관서의 장
-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 담당 또는 서
무업무 담당(자)
-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
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
무업무담당자

5. 읍·면

- 가. 징수관: 읍·면장
- 나. 재무관: 읍·면장(본청 일
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
관)
- 다. 채권관리관: 읍·면장
- 라. 지출원: 경리업무담당(본
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
경비출납원)
- 마. 수입금출납원: 세무·재무
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
리업무담당자
-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 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총무업무담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② -----

----- 군의회 -----

----- . -----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 .

③ -----
-- 별표 2 ----- . -----

----- 임명할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생략)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생략)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 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표 3-----

-----.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생략)

<신설>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
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
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
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
- 나.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업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설치 등 관계규정 변경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명칭 변경 (안 제3조)
- 나.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안 제57조)
- 다. 지출증빙서류 등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안 제153조)